

星 庵 育 英 會
獎 學 規 程 及 施 行 細 則

財團
法人 星 庵 育 英 會

獎 學 規 程

星庵育英會獎學規程

第一條（目的） 本育英會（以下本會라 한다）의 受惠對象者 選拔 및 支給에 關한 事項은 本規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二條（區分） 本會의 獎學事業의 種類를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獎學金 支給

2. 기타 理事會가 定하는 部門에 대한 補助金支給

第三條（受惠對象者） 受惠者 選拔對象은 다음과 같다.

1. （獎學金） 學業成績이 優秀하고 行動이 他의 模範이 되는 자로서 大學校 以上에 在學하는 學生이 經濟的 事由로 勉學하기 困難한 者

第四條（受惠者選拔方法） 受惠者의 選拔方法은 다음과 같다.

1. （獎學金） 學校長이 추천하는 者를 本會事務處의 選拔審査를 거쳐 理事長이 決定한다.

第五條（事務의 委任） 本會 理事長은 受惠對象者를 關係機關에 委任하여 選拔할 수 있다.

第六條（受惠者의 審査方法） 受惠者의 審査方法은 다음과 같다.

1. （獎學金） 書類審査 및 面接審査에 의한다.

第七條（獎學金의 支給） 獎學金은 本人 또는 소속 大學長에게 支給한다. 但, 부득이한 경우에는 保護者（親權者 또는 後見人）에게 支給할 수 있다.

第八條（受惠者의 繼續） 第三條의 規程에 의하여 選拔된 受惠對象者로서 계속하여 獎學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所定の 書類를 提出하여 理事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九條（獎學金의 支給時期） 獎學金의 支給時期는 다음과 같다.

1. 獎學金은 一學期를 단위로 하고 그學期分을 當該 學期初에 支給한다.

第十條 (獎學金의 繼續) 受惠者로 選拔된 者로서 繼續해서 獎學金을 받고자 할때는 第四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十一條 (申請節次와 範圍의 制限) 獎學金의 支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所定の 書類를 갖추어 本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但, 本會는 受惠對象을 學校, 學科를 指定하여 그 範圍를 制限할 수 있으며 自然科學 또는 技術分野를 重視한다.

第十二條 (報告書提出) 獎學金을 받아 修學하는 者는 學業成績, 研究 進行에 대한 結果報告書 또는 本會에서 要請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指定期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受惠者の 定員) 受惠者の 定員과 支給額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十四條 本規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附 則

1. 本規程의 改廢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本規程에 定해 있지 않은 事項은 理事長의 決定에 따른다.

施 行 細 則

星庵育英會獎學規程施行細則

第一條（目的） 本細則是 星庵育英會 獎學規程（以下 規程이라 한다）을 施行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定義）

1. 規程 第三條 第一項의 大學校 以上の 學生이라 함은 四年制大學 大學院에 在學하는 者를 말한다.

2. 規程 第三條 第一項의 優秀한 者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者를 말한다.

①學期末 學業成績이 平均 80 點（100 點基準）以上인 者

②學期末 學業成績 順位가 同學年 當該學科 學生在籍數의 百分의 十以內인 者

3. 規程 第三條 第一項의 行動이 他的 模範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①思想이 健全하고 學業에 充實한 者

②品行이 方正하여 他人에게 嚮望받는 者

③將次 國家社會에 有益하게 기여하리라고 認定되는 者

4. 規程 第三條의 經濟的 事由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家庭이 貧困하다고 機關長이 認定하는 者

第三條 規程 第三條에 해당하는 者를 추천할 때 소속學校長은 受惠 對象者가 國費 또는 其他 獎學金等を 받고 있지 않는 者를 추천 하여야 한다.

第四條（申請書類） 規程 第十一條에 의하여 獎學金을 申請할 때에는 다음의 書類를 各一部씩 구비하여 新學期開始 30 日前에 申請하여

야 한다.

- ①獎學金支給申請書(書式第一號)
- ②推薦書(書式第二號)
- ③學業成績證明書
- ④履歷書
- ⑤號籍謄本
- ⑥親權者,扶養義務者の財産稅納稅證明書 또는 非課稅證明書
- ⑦住民登錄謄本
- ⑧寫眞(명함판 脫帽上半身)
- ⑨서약서(서식제 4 호)

第五條 規程 第八條에 의하여 獎學金을 계속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의 書類를 구비하여 本會에서 指定한 期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 ①獎學金繼續支給申請書(書式 第二號)
- ②學業成績證明書

第六條(獎學金의支給停止) 規程 第十條에 의하여 獎學金의支給을 停止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따른다.

1. 失格: 獎學金의支給을 完全히 中斷한다.

- ①學業成績이 선발기준 이하일 때
- ②停學以上の學事懲戒^受 받았을 때
- ③獎學金을 申請目的 以外에 사용하였을 때
- ④書類上에 虛僞가 발견되었을 때
- ⑤轉學, 轉科, 休學 等 해당學校에서 離脫할 때

但, 轉科한 學科가 本會獎學金支給對象學科일 경우는 例外로 한다.

- ⑥기타 規程 第三條에 明示된 受惠要件이 消滅되었을 때

2. 中止 : 支給을一時中斷하며 原狀復歸時 支給을 계속할 수 있다.

① 取惠中 軍에 入隊하거나 國防上의 目的으로 動員되었을 때

3. 回收 : ①. 獎學金等이 受惠目的에 使用되기 前에 受惠要件이 消滅되었을 때에는 支給된 獎學金을 回收할 수 있다.

②. 本會 理事會에서 回收하라는 決議가 있을 때
但, 受惠者가 規程 第三條의 해당사항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해당學校長 또는 受惠者는 지체없이 本會에 그 事項을 보고하여야 한다.

第七條 (報告書提出) : 規程 第十二條에 의하여 受惠者는 學業成績 및 研究結果報告書を 다음과 같이 各一部씩 本會가 指定한 期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學業成績證明書 (每學期末)

2. 獎學金受惠學期中에 研究實績이 있을때는 學校長 및 本人이 連書하여 그 實績을 當該 學期末前에 本會에 報告를 要한다.

第八條 規程 및 本細則에 定해진 事項에 따라서 理事長은 每學期開始 30 日前에 獎學金의 受惠對象者 選拔要綱을 作成하여 관계大學에 配布한다.

附 則

1. 本細則의 改·廢는 理事長의 決定에 따른다.

2. 本細則에 定해지지 않은 事項은 理事長의 決定에 따른다.

3. 本細則은 서기 19 년 月 日부터 施行한다.

獎學金支給申請書

1. 姓 名	(한글) (漢文)	사 진	
2. 生年月日	西紀 19 年 月 日生 3. 性別		
4. 學 校 名	大學校 科 學年		
5. 本 籍			
6. 住 所	(保護者住所) (전화) (本人住所) (전화)		
7. 出身學校	19 . . . 國民學校卒業	住 居 關 係	자택, 친척집 하숙, 자취 기숙사, 賃 주거약도
	19 . . . 中 學 校 卒 業		
	19 . . . 高等學校卒業		
	19 . . . 大學 科在學		

8. 家族狀況

關係	姓 名	年 齡	職 業	關係	姓 名	年 齡	職 業

本人은 貴會 獎學生이 되고자 所定書類를 갖추어 保護者 連書로
이에 申請합니다.

年 月 日

申請者

①

保護者

①

財團 星庵育英會 貴中
法人

〈書式第一號〉

推 薦 書

1. 學校名	大學校	大學院 大 學	科	學年	
2. 姓 名					
3. 指導教授推薦意見					
4. 申請者 校內活動 評價					
5. 申請者 家計評價					

上記者는 才能이 優秀하고 素行이 方正하고 思想이 健全하며 學究意欲이
 왕성하나 經濟的 事由로 修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貴會獎學金 支
 給對象者로서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기에 推薦합니다.

年 月 日

大 學 校 總 長

大 學 校 學 長

①

財 團 星 庵 育 英 會 貴 中
 法 人

〈書式第二號〉

서 약 서

나는 성암육영회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귀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성 명

인

재 단 법 인 星庵育英會 貴中

<書式第四號>

獎學金繼續支給申請書

1. 姓 名 (한글) (漢文)

2. 生年月日 西紀 19 年 月 日生 3. 性 別

4. 學 校 名 大 學 校 大 學 院 科 學 年

5. 本 籍

6. 住 所 (保護者住所) (전화)

(本人住所) ※ 자가, 친척가, 자취,
하숙, 기숙사, 세, 주거약도
(전화)

本人은 貴會 獎學金의 支給을 받고 있는 者인바 계속하여 獎學
金을 支給받고자 소정 書類를 구비하여 이에 申請합니다.

年 月 日

申請者 인

保護者 ㉠

(申請者와의 關係_____)

財團
法人

星 庵 育 英 會 貴 中

＜書式第三號＞